

201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학 모집요강
[“나”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목 차

1. 모집인원	1
2. 지원자격	2
3. 모집일정	3
4. 원서접수	3
5.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5
6. 학부성적의 반영방법	5
7. 법학적성시험의 반영방법	5
8. 서류심사 성적의 반영방법	5
9. 심층면접 시행방법	5
10. 선발방법	6
11. 합격자 등록	7
12. 미등록 총원(추가합격자)	7
13. 전형료	7
14. 지원자 유의사항	7
【자료】 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9

1. 모집인원

가. 정원내 인원

- 1)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분리하여 선발하되, 특별전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지원자격 결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한다.
- 2) 학생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쿼터제도를 운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비법학사, 타대학 입학쿼터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
 - 가) 사회적 취약계층은 특별전형으로 5% 이상 선발한다.
 - 나) 입학정원의 1/3 이상을 비법학사 중에서 선발한다. 비법학사는 순수 비법학사와 타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법학사로 한다.
 - 다) 입학정원의 1/3 이상을 타대학 학위 취득자 중에서 선발한다. 타대학 출신자는 성균관대학교가 아닌 타대학의 학부 졸업자로 하며, 학사편입에 의한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한다.

3)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계획

가) 전형유형별 선발인원

입학정원	선 발 인 원		
120명	특별전형	6명 이상	5% 이상
	일반전형	114명 이내	95% 이내

나) 비법학사/법학사 출신자 선발인원

입학정원	선 발 인 원		
120명	비법학사	41명 이상	34% 이상
	법 학 사	79명 이내	66% 이내

다) 타대학/본교(성균관대학교) 출신자 선발인원

입학정원	선 발 인 원		
120명	타 대 학	41명 이상	34% 이상
	본 교	79명 이내	66% 이내

나. 정원외 인원

2013학년도 '정원외 인원'의 선발은 2012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한다. 단,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

※2012학년도 결원인원의 확정일 : 2013. 2. 28.

2. 지원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

○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 3)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공인영어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성적을 제출한 자

구 분	TOEFL		TEPS	TOEIC	비고
	iBT	PBT			
지원자격 기준	82점 이상	553점 이상	575점 이상	700점 이상	2012.10.12. 이전 발표된 점수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법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준용함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 **【첨부 자료】 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 참조 바람

다. 지원자격 부적격자,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입학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한다.

3. 모집일정 “나”군

구 분	전 형 일 정	유 의 사 항
입학원서 접수	2012. 10. 8.(월)~10. 12.(금) 18:00	인터넷 접수 (www.uway.com)
제출서류 접수	2012. 10. 8.(월)~10. 17.(수) 18:00 (토, 일요일은 휴무임)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기준)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	2012. 11. 8.(목) 15:00	수험생 유의사항 및 면접고사장 공고 sls.skku.edu 또는 admission.skku.edu
심층면접	2012. 11. 17.(토) 07:30~	필기구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최종합격자 발표	2012. 12. 7.(금) 14:00	sls.ac.kr 또는 admission.skku.edu (합격증, 등록금고지서 인터넷 교부)
합격자 등록	2013. 1. 2.(수)~1. 4.(금)	
추가합격자 발표	2013. 1. 7.(월)	sls.skku.edu 또는 admission.skku.edu

4. 원서접수

가. 지원방법

- 1)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 2) 법학사 및 비법학사의 복수학위 소지자는 지원시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분야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 3) 제출서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우편등기로 접수(제출서류 접수마감일 도착기준)하여야 한다.
- 4) 본교의 모집 군은 “나”군으로, 동일한 모집군내에서는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위반시 지원자격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나. 제출서류

【필수 서류】

- 1)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후 출력) 1부
-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학사 학위가 명시된 서류) 1부

- 3) 백분율 성적이 등재된 전학년 성적증명서(편입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4)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1부
-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1부
- 6)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본교 소정 양식) 1부
- 7) 【특별전형 지원자】 사회적 취약계층 입증서류 일체

【선택 서류】

- 8) 재직(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및 국가고시(1, 2차) 합격증, 각종 수상경력서류,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증명서, 외국어 성적표, 대학이후 학력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봉사활동 사실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등

【추가 제출서류】

- 9) 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학력조회동의서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시 입력 후 서명/날인
 - 학력조회이뢰서 : 양식 상단의 School Name 란 부터 Student ID Number 란까지만 기입
 - 출신 대학에 대한 인가 확인서 : 주한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급
- 10)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中國高等教育學歷查詢報告(영문) : <http://www.chsi.com.cn> 의 學歷網上查詢 참고

다.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1)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낱장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2) 제본, 바인딩, 포장은 허용하지 않으며, 집게로 제출서류의 좌측 상단을 고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일본어시험(JLPT,JPT), 중국어시험(HSK) 성적표는 번역 및 공증없이 제출할 수 있다
- 4) 성적증명서에 학위등록번호가 표기된 경우 졸업(학위수여)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5) 졸업(학위수여)예정자격을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2013. 2. 26.(화) 17:00까지 졸업(학위수여)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

5.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구분	전형요소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	서류심사	심층면접	합 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우선 선발		15점 (15%)		10점 (10%)	15점 (15%)	40점 (40%)	-	80점
일반 선발		15점 (15%)		10점 (10%)	15점 (15%)	40점 (40%)	20점 (20%)	100점

6. 학부성적의 반영방법

- 가. 학사학위과정 성적은 백분율성적(백분위성적, 백점환산성적)을 반영한다.
- 나.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지원일 현재 확정된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7. 법학적성시험의 반영방법

- 가. 입학원서 접수일이 속한 년도에 실시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반영한다.
- 나.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 다. 논술 영역의 성적은 자체 채점하여 반영한다.

8. 서류심사 성적의 반영방법

서류심사에서는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개인경험 및 수상경력(Outside Experiences / Honors),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경력, 외국어 능력, 재직경력, 각종 자격증, 국가고시(1,2차) 합격사항, 봉사활동, 각종 사회활동, 기타 개인의 역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반영한다.

9. 심층면접 시행방법

법적사고력(Legal mind)을 평가하는 지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정리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술면접을 실시한다.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잠재력에 관한 심사를 병행한다.

10. 선발방법

구 분		전형요소 배점	총점	선 발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적성시험 15점 (언어이해, 추리논증) ▪ 법학적성시험 논술 10점 ▪ 학부성적 15점 ▪ 서류심사 40점 	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선발자 50명 이내 - 심층면접 대상자 192명 내외 ▪ 특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접 대상자 18명 내외
2단계 (최종)	우선선발자	▪ 2단계 전형 없음	-	▪ 일반전형 50명 이내
	심층면접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80점 ▪ 심층구술면접 20점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형 64명 이상 ▪ 특별전형 6명 이상

가. 1단계 선발

- 1) 법학적성시험(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학부성적, 서류심사 성적을 합산하여 일반전형 우선선발자 및 전형유형별 심층면접대상자를 선발한다.
- 2) 우선선발자는 일반전형에서 50명 이내를 선발한다.
- 3) 심층면접 대상자는 일반전형 192명 내외, 특별전형 18명 내외를 선발한다.

나. 2단계 선발(최종선발)

- 1) 심층면접 대상자를 대상으로 1단계 성적과 심층면접 성적에 의한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 2) 일반전형 우선선발자는 별도의 2단계 전형을 거치지 않고 최종 선발한다.

다. 선발과정에서 각 전형요소별 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전형총점 및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는다.

라. 최종선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선발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 ① 심층면접 성적이 높은 자
- ② 서류심사 성적이 높은 자
- ③ 논술 성적이 높은 자
- ④ 적성시험 총점(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이 높은 자
- ⑤ 학부성적이 높은 자

11. 합격자 등록

가. 합격자 등록방법은 합격자 유의사항과 등록금 고지서에서 안내한다.

나. 학교가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12. 미등록 총원(추가합격자)

가. 미등록 총원에 따른 추가합격자 선발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추가합격자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총원한다.

13. 전형료

구 분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반환 전형료
일반전형	200,000원	50,000원
특별전형	50,000원	없 음

※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지원자격 결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하므로 일반전형료와의 차액인 150,000원을 별도의 소정기간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14. 지원자 유의사항

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고등교육법 제34조)

- 1) 입학전형과정의 모든 과정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2) 부정행위자는 입학전형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나.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학교는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시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격 결격 및 입학전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현역 군복무자는 2013. 2. 28. 이전에 전역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원서 접수시 소속 부대장의 전역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취학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외국 소재 대학 출신자 유의사항

○서류의 미비(미제출 포함), 학위확인 비협조 혹은 입학·졸업 후라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교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

- 1) 외국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만 본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 2) 외국 소재 대학 출신자는 지원전 반드시 UNESCO 산하의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에서 “List of Universities of the World”를 확인하여 본인의 학위취득 대학(원)이 해당 리스트에 등재되어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학위취득 대학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영문명칭이 다른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주한 영사(대사)가 발급한 정식 학위수여기관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외국 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는 입학 후에라도 본교에서 학력조회에 관한 소명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지원자격 결격자, 불합격자, 입학전형 미응시자의 경우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일반전형 1단계 불합격자의 경우 본인 계좌로 소정의 전형료를 반환한다.

바. 학교가 정한 등록장소에서 등록시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사. 등록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환불신청서를 2013. 2. 27.(수) 15:00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한다.(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 이후 제출 시에는 본교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른다.

아. 합격자는 신입생 학사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학사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내 받아야 한다.

자.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대상	지원 자격	제출 서류
1. 경제적 취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붙임【양식2】 참조 (차상위의료급여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 해당자 또는 그의 자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최근 3년간 (가구원 전부) ○ 재산세(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 - 최근 3년간 (가구원 전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최근 3년간 (가구원 전부)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3년간 (가구원 전부)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 행정안전부 전체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요청 동의서 - 붙임【양식3】 참조
2. 신체적 취약	○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등급 3급이상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진술서)- 붙임【양식1】 참조
3. 사회적 취약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가유공자로서 4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산재급여지급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재산세(지방세) 과세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대상	지원 자격	제출 서류
3. 사회적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연간소득2400만원미만의 근로자로서 지방세납부액이 월5만원 이하인 세대,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5만원 이하이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재산세(지방세) 과세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 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재산세(지방세) 과세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가정위탁보호아동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보호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재산세(지방세) 과세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자기확인서(진술서) - 붙임【양식1】 참조

- ※ 재산세(지방세) 과세(납세) 증명서는 과세(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증명서를 제출
- ※ 지원자 자신이 특별전형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격인증은 입학전형(사정)위원회에서 하며 추후 거짓이 드러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의 제출 또는 전문가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음.

【양식 2】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을 위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자	/		
세대주	/		
지원자 주소	(우편번호 :)		
수혜급여 (확인일 기준)	종 류 (해당칸 표시)	기 간	
	() 자활급여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장애수당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한부모 가정지원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p>상기자(지원자 또는 세대주)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특별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대상가구’의 일원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성명 : (인)</p> <p>붙임 :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정책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관련서류</p>			
<p>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시·군·구청(읍·면·동)장 (직인)</p>			
<p>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p>			

【양식 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을 위한

행정안전부 전체재산 납부내역 확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전체재산 납부내역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서 명)

보호자 _____ (서 명)

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2012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A)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소득인정액(A×1.2)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보험료(A×1.2×0.029)	19,257	32,788	42,417	52,045	61,673

※ 6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6인 가구 : 2,048,904원)

▣ 2011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소득인정액(A×1.2)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2,685,944
보험료(A×1.2×0.0282)	18,023	30,687	39,698	48,710	57,721	66,732	75,744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0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인정액(A×1.2)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보험료(A×1.2×0.02665)	16,129	27,463	35,527	43,592	51,656	59,721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 2009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소득인정액(A×1.2)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보험료(A×1.2×0.0254)	14,961	25,474	32,955	40,435	47,916	55,396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2,062,877원)